

##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기준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■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 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 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중대본
기준	■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	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
	▶ 전국: 500명 미만 ▶ 수도권: 250명 미만	▶ 전국: 500명 이상 ▶ 수도권: 250명 이상	▶ 전국: 1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500명 이상	▶ 전국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■ 방역수칙 준수	■ 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행사 금지
집회	■ 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기타 시설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박물관·과학관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